

#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도로관리과)  
제출일 : 2021. 7.

## 1. 제안이유

- 불필요하게 조례에 재정의된 조항(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에 정의)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
- 실효성 없는 공영자전거(시민자전거)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3조)
- 다. 자전거 주차요금(안 제4조)
- 라.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마.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(안 제7조)
- 바.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·운영과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(안제8조~ 제9조)
- 사.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재정지원(안 제10조)
- 아. 자전거이용자 보험가입(안 제11조)
- 자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## 3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(법제처, 2018. 83쪽)의 ‘정의규정’ 유의사항 중 ‘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.’ 라는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